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0년 11월 일 도시관리위원회</p>	<p>1. 심사경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 ○ 의결(처리)건수 : 2건(원안동의 1건, 수정동의 1건) ○ 안전별 심사결과 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의안번호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제출일자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회부일자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상 정 내 역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심사결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77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0. 8. 2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0. 8. 26</td> <td>제1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(2000.10.4)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(2000.11.7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류 원안동의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1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0. 10. 2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0. 10. 23</td> <td>제1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(2000.11.7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정동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의안번호	제출일자	회부일자	상 정 내 역	심사결과	677	2000. 8. 24	2000. 8. 26	제1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(2000.10.4)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(2000.11.7)	보 류 원안동의	718	2000. 10. 23	2000. 10. 23	제1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(2000.11.7)	수정동의	<p>2. 상정일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(2000.10.4) 상정 -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(2000.11.7) 상정, 의결 <p>3. 제안이유 및 요지</p> <p>가. 제안이유 별첨내용</p> <p>나. 주요요지 안전별 내용 별첨</p> <p>4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○ 안전별 내용 별첨</p> <p>5. 심사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 절차로서, 도시계획 결정과 변경결정을 실제로 영향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, ○ 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 이익에 관 			
의안번호	제출일자	회부일자	상 정 내 역	심사결과															
677	2000. 8. 24	2000. 8. 26	제1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(2000.10.4)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(2000.11.7)	보 류 원안동의															
718	2000. 10. 23	2000. 10. 23	제1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(2000.11.7)	수정동의			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계되는 결정(변경)안 1건에 대하여는 시장 결정(변경)안대로 원안동의 하였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형편이나 도시계획결정 내용으로 보아 시장결정안에 특별히 의견 있는 1건을 수정동의하였음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 안 동 의 (1건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40%; text-align: center;">677</td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right;">제출일자 2000. 8.24</td> </tr> </table>		의안 번호	677	제출일자 2000. 8.24															
의안 번호	677	제출일자 2000. 8.24																	
<p>1. 안건명 : 지하철 분당선, 7호선 정거장 등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지하철 분당선 및 7호선 정거장 등 도시철도의 세부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시설의세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세부시설명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위 치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규 모(m²)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변경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철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분당선본선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왕십리역~ 장지동 596-2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B=11~23m L=16,642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• 도곡정거장 규모변경에 따른 인접 본선 선형조정 (A=46m' 감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릉정거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남구 역삼동 305-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=8,839 →9,083 (증 244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• 분당선 단계별 건설에 따라 시·중착역으로 변경됨에 따 른 규모 변경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시설의세분	세부시설명	위 치	규 모(m ²)	비 고	변경	도시철도	분당선본선	왕십리역~ 장지동 596-21	B=11~23m L=16,642m	• 도곡정거장 규모변경에 따른 인접 본선 선형조정 (A=46m' 감소)	"	"	선릉정거장	강남구 역삼동 305-2	A=8,839 →9,083 (증 244)	• 분당선 단계별 건설에 따라 시·중착역으로 변경됨에 따 른 규모 변경
구분	시설의세분	세부시설명	위 치	규 모(m ²)	비 고														
변경	도시철도	분당선본선	왕십리역~ 장지동 596-21	B=11~23m L=16,642m	• 도곡정거장 규모변경에 따른 인접 본선 선형조정 (A=46m' 감소)														
"	"	선릉정거장	강남구 역삼동 305-2	A=8,839 →9,083 (증 244)	• 분당선 단계별 건설에 따라 시·중착역으로 변경됨에 따 른 규모 변경														

구분	시설의세분	세부시설명	위 치	규 모(m ²)	비 고
변경	도시철도	영동정거장	강남구 대치동 1011-81	A=5,040 →8,425 (증 3,385)	• 출입구 확대설치(4→8개소) 및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규모 변경
"	"	도곡정거장	강남구 도곡동 466-4	A=5,118 →5,353 (증 235)	•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및 공 조환기구 추가설치에 따른 규모 변경
"	"	개포1정거장	강남구 개포동 175	A=8,855 →9,288 (증 433)	• 출입구와 환기구 위치 조정 에 따른 규모 변경
"	"	개포2정거장	강남구 개포동 181-2	A=7,388 →8,749 (증 1,361)	• 정거장본체 일부 및 출입구 2개소 위치확정에 따른 규모 변경
"	"	개포3정거장	강남구 일원동 700	A=7,985 →8,241 (증 256)	• 환기구, 장비반입구 등 위치 조정에 따른 규모 변경
"	"	본선환기구	강남구 도곡동 527	A=285	• 본선 환기구 설치위치 확정 에 따른 변경
"	"	본선환기구	강남구 수서동 734	A=333	• 본선 환기구 설치위치 확정 에 따른 변경
"	"	보라매정거 장(7호선)	영등포구 신길동 508	A=8,307 →8,317.6 (증 10.6)	• 출입구 설치로 인한 보도폭 확보(사유지 편입)

4. 주민의견청취결과 : 의견없음
5.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견 : 의견없음
6. 검토의견(전문위원)
 - 본 안건은 지하철 분당선 본선 선형조정과 선릉정거장 등 7개 정거장 변경, 2개의 본선환기구를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
 - 분당선 본선의 경우 도곡정거장 규모변경에 따른 인접 본선 선형을 조정하는 것이며, 7개 정거장의 경우 회차로 확보로 인한 규모증가, 민원에 의한 출입구의 확대 및 연결통로 설치,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및 공조환기구 추가설치, 출입구와 환기구 위치조정, 정거장 본체 일부 및 출입구 위치확정에 따른 규모변경, 출입구설치로 인한 보도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, 본선환기구의 경우 환기구 설치 위치 확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지하철 건설계획의 확정·변경에 따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됨.
 - 단, 본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의뢰후

도곡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환기구의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철도청 서울건설사업소와 위치변경기로 협의한 바 있는데 위치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별도의 절차이행이 필요치 않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7. 심사결과 : 원안동의
 -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

수 정 동 의
(1건)

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718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2000.10.23

1. 안 건 명 : 도시계획용도지역(일반주거지역) 및 지구(경관지구)변경결정

2. 제안이유 : 종로구 행촌동 1-31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를 해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.
3. 주요요지
 ○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(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)

위 치	용 도 지 역			비 고
	변경전	변경후	면적(m ²)	
종로구 행촌동 1-31번지 일대(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)	일반주거지역	제1종 일반주거지역	4,523.1	자연경관지구 해제지역

○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(자연경관지구 해제)

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용 도 지 구(m ²)			비고
			변경전	변경후	면 적	
경관지구	자연경관지구 (인왕지구)	종로구 행촌동 1-31번지일대 (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)	756,449	751,825.9	(감) 4,523.1	

4. 주민의견청취결과 : 의견없음
 5.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견 : 이견없음
 6. 검토의견(전문위원)
 ○ 본 안건은 종로구 행촌동 1-31번지일대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자연경관지구 4,523.1m²를 해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
 ○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는 '92.3.12일 58,034m²가 지정되어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 등 현지개발 방식(자력개발)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
 ○ 동지역은 '98.9.19 시장과의 데이트시 자연경관지구의 해제는 어려우나 인접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 사업을 시행토록 검토되어 '99.6.11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가 편입된 지역으로 '99.6.17 건축허가 제한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니 우선 행촌동 171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12,120m²를 우선 해제하여 달라는 종로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'99.11.15 자연경관지구를 해제,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번 추가편입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지구를 해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
 ○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재산권 보호측

면에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자연경관지구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지역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해제대상지 동측 및 남측의 주거환경개선지구 구역 외의 지역도 자연경관지구의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.

7. 심사결과 : 수정의견 제시
 ○ 자연경관지구의 효율적관리 측면에서 동측 및 남측의 주거환경개선지구 구역외의 자투리 형태의 지역도 경관지구 해제지역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.

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67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8.24
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지하철 분당선, 7호선 정거장 등 변경결정
 2. 입안내용 : 도시계획시설(철도 : 도시철도) 변경결정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